

의안번호	제 492 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월 일 (제 321 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3년 6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2
----------	-----

제출연월일 : 2013년 6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반영 및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6조)
 -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기술심의, 대형공사·특정공사 입찰방법심의, 일괄·대안 입찰공사 입찰안내서 및 설계심의 등 세부사항 명시
 - 도, 시·군 시행 용역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 소위원회·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일괄·대안 입찰공사 설계심의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사항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심의위원으로서 윤리와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위·부패 등 결격사유 명시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현행조례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설 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5급 이상의 공무원
2. 건설 관련 단체 임원 및 연구기관의 임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보궐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회의의 소집은 제10조에 따른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공사로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제7조(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영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2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건설기술심의회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5조에 따른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건설기술심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전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하여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기관에서는 건설기술심의 요청서에 설계도서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개최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심의 요청 결과를 요청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을 조사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 관리) 제10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기관은 그 조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속임수에 의한 방법 또는 영 제23조의 결격사유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심의수수료)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심의 내용 및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충청북도 본청 및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출장소
3. 충북개발공사

② 수수료는 위원회 심의 후 3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에 수수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1-06-15 조례 제 02659호
(일부개정) 2006-12-22 조례 제 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7-05-11 조례 제 3005호
(일부개정) 2008-07-01 조례 제 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05-14 조례 제 3256호
(일부개정) 2010-08-11 조례 제 327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충청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정수의 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도 및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관계 단체의 임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원
3.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4.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분야에서 3년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건설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중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도지사는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당해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본청 건설기술심의 관계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심의 담당자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게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전에 대하여 예정 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삭제 2001. 6. 15)

제10조 삭제 <2010. 5. 14>

제11조(심의요청) ①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신청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필요시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기타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건설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것. 다만, 심의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 심의토록 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7일 이내

②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별지 제5호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건설기술심의중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8. 1. 16)

② 위원의 현장조사시에는 심의 요청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처리) ① 심의가 끝나면 도지사는 이를 심의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중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심의의결)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14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0조제3호에 의한 설계적격심의의 경우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5. 11]

② 제10조제3호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기술검토비, 수당 및 여비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07. 5. 11]

제15조의2(수수료) ①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별표의 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5.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위원회의 심의전까지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도 및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개정 2010. 5. 14>

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제15조의2 관련)

구 분	수수료 산출기준 (1건당)
1. 「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같은 조 같은 항 제1의2호의 심의 사항	위원 수×(안전심사수당+회의출석수당+여비)
2. 「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의4호의 심의사항	위원 수×(회의출석수당+여비)
3. 「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제1의3호의 심의사항	위원 수×(안전심사수당×응찰업체수) + 위원 수 × (여비+회의출석수당) × 회의참석횟수
4. 그 밖의 심의사항	위원 수×(안전심사수당+회의출석수당+여비)
<p>※ 비 고</p> <p>1. 안전심사수당, 회의출석수당 및 여비 :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에서 정하는 금액</p> <p>2. 응찰업체 수는 일괄입찰·대안입찰 공사의 입찰에 응한 업체의 수를 말한다.</p>	

[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심의신청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 설계의 심의를 신청합니다.

1. 공사명 :
2. 공사개요 :
3. 공사위치 :
4. 소요공사비 :
5. 착공예정연월일 :
준공예정연월일 :
6. 설계상특이사항 :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술변경심의신청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의 설계변경 심의를 신청합니다.

1. 공사명 :
2. 공사개요 :
3. 공사위치 :
4. 소요공사비 :
5. 당초설계금액 :
- 변경설계금액 : (증감)
6. 착공년월일 :
7. 준공예정년월일 :
8. 계약업체명 :
9. 변경사항 :
10. 변경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회 의 록

1. 안 건 :
2. 회의일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일련번호	위원성명	서명

5. 회의결과 : 별첨

(별지 제4호 서식)

건설기술심의대장

공사명	의안번호	신청자		
접수일자	사전심사 기간	회의일시	완결 일자	
공사기간	총공사비	금 회 공 사 비		
심사위원	의견서 제출위원			
	회 의 불참위원			
심사결과				
특기사항				
비 고				

관계법령 발취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군사시설공사 중 군사기밀에 관련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중앙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전문개정 2009.12.29]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15, 2013.2.20,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지방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5. 해당 지방위원회가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의 시·도지사 및 그 시·도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④ 지방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2의 범위에서 추가하여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3.3.23>
-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2.7.13>

⑦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서기 및 위원 윤리강령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고, 제1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9조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중앙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1.12.13, 2013.2.20, 2013.3.23>

⑧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2.20>

[전문개정 2010.12.13]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8조제4호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8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3>

③ 분과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2.2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전문개정 2010.12.13], [제목개정 2013.2.20]

- 제12조(소위원회)** ①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③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0.12.13]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표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명단을 공개한다.

가. 건설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기술직렬 공무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5급 기술직렬 공무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건설 업무 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또는 기술사·건축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사람,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부교수·조교수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평가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위원장은 위원의 임기 중에 위원의 기본역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운영

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이 표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위원회 심의일 20일 이전에 선정한 후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다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마목에 따른 협의를 거쳐 위원의 선정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가 끝난 후 입찰업체별 종합평가점수, 소위원별 평가점수, 사유서 및 세부 감점 내용을 실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 설계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업체가 발주청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에 관한 심의기준·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마.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호다목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20>]

제4조(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전문개정 2010.12.20]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0.12.20>]

[참조조항]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의 시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용역업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1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및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 감리전문회사[설비공사에 대한 감리자격을 갖춘 자와 공동수급체(共同受給體)를 구성한 감리전문회사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④ 설계 등 용역업자가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배상(賠償)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업자는 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